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87781(본소), 2022가단8779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9. 3.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22. 3.경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20만 원도 포함)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망인은 2017. 11. 24.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40만 원에 차용하면서, 망인 소유 시흥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21. 1. 22.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차용원금 2,000만 원 및 12개월 분 이자 48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3,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하였다. 이에 망인은 원래 피고에게 2,48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 매도를 위하여 피고의 강박에 어쩔 수 없이 3,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차액 520만 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 바람에 망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등기권리증 작성 비용 5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망인이 2017. 11. 24.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40만 원에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위 근저당권이 2021. 1. 22. 해지되어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근저당권 해지 당시 원래 망인이 부담하던 원리금 채무 2,480만 원보다 많은 3,000만 원을 피고의 강박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저당권 해지 당시 망인이 피고에게 부담하던 원리금 채무가 2,480만 원이라는 주장은 근저당권 해지 시점인 2021. 1. 22.까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12개월 분 480만 원뿐이었다는 사실, 즉 2020. 1.경까지는 이자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인정할 거래내역 등의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근저당권 해지 당시 피고가 망인을 강박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망인의 등기권리증 관련 확인서면 작성 비용을 망인이 아닌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경부터 2021.경까지 망인에게 페인트자재를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미수금 원금 19,000,000원 및 이자 9,532,273원 채권이 있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자 22,619,178원의 채권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변제한 30,000,000원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므로, 이를 충당하면 망인을 상속한 원고는 피고에게 여전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미수금 채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3호증(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 사이의 법인 간 거래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각 법인의 대표이사도 망인 또는

피고와 일치하지 않는다.

나)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작성된 것으로서 장시간 경과하였고, 그 금액도 피고의 청구금액과 맞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관련 원리금 채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해지될 무렵 망인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관련 원리금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망인이 지급한 3,000만 원만으로는 그 원리금 총당에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만약 3,000만 원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리금 채권이 남아있었다면 피고 측에서 근저당권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망인이 지급한 3,000만 원 중에는 미수금 채권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유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여전히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관련 원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재현